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4
----------	-----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혜련 의원)

1. 제안이유

- 가. 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임.
 -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시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재단법인¹⁾의 경우 해당 의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1) 본 검토보고서에는 출연기관은 고려하지 않았음. 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임.

- 아래의 표는 설립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두는 것으로 명시한 재단의 사례임

연번	조례명	해당 조항
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3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6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6조제2항
8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위와 같이 서울시가 설립한 대부분의 재단에서 정관의 변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동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서울시특별시의회가 가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여러 재단(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50+재단)에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 사전보고의무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

공보건의료재단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내용이 법률적으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단의 조례들과의 형평과 비례를 따져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4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김혜련, 양민규, 홍성룡,
채유미, 송아량, 이은주,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의원 (16명)

1. 제안이유

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관) ①·② (생략) <u><신설></u>	제6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